

내부거래위원회규정

Version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Eco Lab

목 차

제1장 총칙.....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조 (권한).....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장 구성.....	4
제4조 (구성).....	4
제5조 (위원장).....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장 회의.....	5
제6조 (소집권자).....	5
제7조 (소집절차).....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8조 (결의방법).....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9조 (부의사항).....	6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7
제11조 (통지의무).....	7
제12조 (의사록).....	8
제4장 기타.....	8
제13조 (간사).....	8
제14조 (규정의 개폐).....	8
제15조 (기타).....	8
부칙.....	9

제 1 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내부거래 시 공정성 및 적정성 등의 확보를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사회 내에 설치함에 있어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 ① 위원회는 이 규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의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성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면서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그와 같은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

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로 정하여 그 5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원장과 위원만 가진다. 단,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각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의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단,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외)
2. 기타 위원회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항
 -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과거 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여부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통지의무)

- ① 위원장은 결의된 사항을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

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위원회가 재의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통제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에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기타

제13조 (사무국)

이사회 담당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5조 (기 타)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지침으로



Title

내부거래위원회규정

Document #: SK바이오사이언스 기본규정

Version #: 1.0

Issue Date: 2020/10/29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